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0
----------	------

2020년 4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4월 3일,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4월 24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사업시행자인 (주)세빛섬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공익성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인정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3호).
- 2)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이 재 호)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 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가 보다 폭 넓은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고 세빛섬의 시민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세빛섬 운영 현황 및 배경

- 반포한강공원에 위치한 세빛섬은 총 사업비 1,390억원(민간자본)을 들여 3개의 인공섬(가빛섬, 채빛섬, 솔빛섬)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에 개장되었고,
-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세빛섬이 20년간 무상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 납할 예정이며, 이후 10년간 유상사용할 예정임.

<표 1> 세빛섬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반포한강공원(반포대교 남단 좌측) ◆ 총사업비 : 1,390억원 ◆ 준 공 일 : 2011. 9. ◆ 개 장 일 : 2014. 5(부분개장), 2014. 9(전면개장) ◆ 사 업 자 : (주)세빛섬 ◆ 운영기간 : 20년 운영후 기부채납(BOT 방식) + 10년 유상사용 				
구 분	계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면적	9,995㎡	5,523㎡	3,449㎡	1,023㎡
주용도		카페, 레스토랑, 컨벤션	편의점, 레스토랑	전시/공연장
수용인원	5,385명	3,600명	1,450명	335명



- 당초 세빛섬은 완공 직후인 2011년 9월에 전면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과 운영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로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서울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사업시행자에 91억 9천2백만원의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14년 3월 동 조례를 제정하여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공익성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2)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 사업 추진 실적

-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주)세빛섬에서 2015년부터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말 기준 지체상금 부과액은 66억 4천만원임.

<표 2> 연도별 지체상금 부과취소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체상금	사업정산 (감액)	잔 액 (이월)	비 고
2015년	9,192	921	8,271	매년 사업 완료후, 외부 공공성 심의 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함
2016년	8,271	444	7,827	
2017년	7,827	253	7,574	
2018년	7,574	429	7,145	
2019년	7,145	505	6,640	

<표 3> 세빛섬 공공성확보 사업 추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산금액 25억 5천2백만원	9억 2천1백만원	4억 4천4백만원	2억 5천3백만원	4억 2천9백만원	5억 5백만원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7억 6천4백만원	멘토·멘티 만남의 날	AT EDUCOM 국제포럼 개최	저소득 다문화 가정 문화역사 교육운영	저소득 다문화 부부 결혼식 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스포츠 스타와 멘토링프로그램” 등
	저소득·다문화가정 문화·역사 교육	장애인·탈북민 일자리 창출	폐지수집 노인 지원사업	폐지수집 노인 지원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신진작가&미술영재 멘토링프로그램”
	장애인 일자리 창출 NGO 단체 지원	어르신 힐링 나눔		소외 계층 아동 지원사업	
	온누리 사랑 챔버 연주회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세빛영상 페스티벌				
	한강몽땅 페스티벌과 연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서울복지국제포럼				
공익적·문화적 서비스 제공 7억 8천만원	어린이날 가족 나들이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셔틀버스 운영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셔틀버스 운영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셔틀버스 운영
	영상 콘서트 축제	세빛섬 가을 축제	한강몽땅 페스티벌	한강몽땅 페스티벌	한강몽땅 페스티벌] 지원
	신예 아티스트 문화·예술 축제	신예 아티스트 문화·예술 축제	신예아티스트 문화 예술 축제	신예아티스트 문화 예술 축제	청년 문화 공유
	SBS 러브 FM '최백호의 낭만시대' 공개방송 지원			세빛섬 가을 축제	
관광 MICE 활성화 9억 8천3백만원	한강 상징 조형물 전시	한강 봄꽃 축제	한강 봄꽃 축제	한강 봄꽃 축제	서울 관광활성화 (1) “스포츠 블로썸” 캠페인
		한강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		한강 달빛 축제	서울 관광활성화 (2) “겨울빛 축제, 신규 이벤트” 등
기타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 그동안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공익적·문화적 서비스 제공, 관광·MICE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25억 5천2백만원을 공익사업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축제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사업내용이 점차 획일화되는 등 다양한 공익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조례 개정의 필요성 검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명시된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획일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제3호와 같이 현행의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한강공원과 세빛섬을 찾는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년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사업의 이행내역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10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4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2. 주요 골자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사회적 약자”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약자 및 소외계층”을 “약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 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 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u>세빛 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u>” (이하 “공공성 확보계획” 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 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 다.</p> <p>1.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p> <p>2. 세빛섬 운영시 사회적 <u>약자</u> <u>및 소외계층</u> 지원에 관한 사 항</p> <p><신 설></p> <p>② ~ ⑤ (생 략)</p>	<p>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 ----- ----- <u>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 보계획</u> ----- ----- ----- -----.</p> <p>1. ----- 주-----</p> <p>2. (현행과 같음)</p> <p>3. <u>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u>약자</u> --- -----</p> <p>3. (개정안과 같음)</p> <p>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플로섬”을 “(주)세빛섬”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를 “시장”으로, “조속한”을 “빠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의서”를 “합의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을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치”를 “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약자 및 소외계층”을 “약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3.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시로부터”를 “시로부터”로, “서울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

른”으로, “이내”를 “내”로 한다.

제9조 중 “서울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 해촉)”을 “(위원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손상하는”을 “떨어뜨리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u>총 칙</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세빛섬 사업”이란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u>사업시행자</u>’라 한다)가 투자하여 조성한 세빛섬 및 미디어아트갤러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영업활동을 말한다.</p> <p>4.·5. (생략)</p> <p>6. “사업시행자”란 세빛섬을 조성한 <u>(주)프로섬</u>을 말한다.</p> <p>7. (생략)</p> <p>제4조(운영 정상화)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u>조속한</u>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이하 ‘<u>합의서</u>’라 한다)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약서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p> <p>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u>총칙</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사업시행자</u>” ----- ----- -----.</p> <p>4.·5. (현행과 같음)</p> <p>6. ----- <u>(주)세빛섬</u>-----.</p> <p>7.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 정상화) ① ----- --- “<u>시장</u>” ----- ----- <u>빠른</u> ----- ----- -----.</p> <p>② ----- ----- “<u>합의서</u>”----- ----- -----.</p> <p>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 -----</p>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 계획” (이하 “공공성 확보계획” 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세빛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제1항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세빛섬 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간까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 및 이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사업시행자

-----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

1. ----- 주-----

2. ----- 약자 -----

3.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

----- “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

는 제6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승인 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시장에 제출하고 서울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시행완료내역 정산 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승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시의회 보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 5. (생략)

제12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 시로부터 -----

----- 시의 -----
-----.

제8조(지체상금) ① ----- 따 -----
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른 -----
----- 내 -----

-----.

제9조(시의회 보고) -----
----- 서울특별시의회 -----

-----.

제11조(위원회 설치) -----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⑥ (현행과

① ~ ⑥ (생략)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제15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 한다.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시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1.·2. (현행과 같음)

3. -----

떨어뜨리는 -----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
----- 없으면 -----

-----.